

大嬪宮의 연혁과 의례적 변화 양상

김 윤 정*

1. 머리말
2. 경종 대 대빈사우의 의례적 위상
3. 영·정조 대 대빈 의례의 배제와 차등
4. 고종 대 이후 의례적 분등의 완화
5. 맺음말

1. 머리말

대빈궁은 숙종의 후궁이자 경종의 생모인 禧嬪 張氏의 사당으로 七宮에 포함되어 있다. 칠궁은 왕의 생모인 일곱 후궁의 사당인데, 대빈궁 외에 仁嬪 金氏의 儲慶宮, 淑嬪 崔氏의 毓祥宮, 靖嬪 李氏의 延祐宮, 暎嬪 李氏의 宣禧宮, 綏嬪 朴氏의 景祐宮, 純獻皇貴妃 嚴氏의 德安宮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궁은 원래 독립적인 사당으로 존재했으나 1908년 육상궁 영역에 육궁으로 합설되었고, 1929년 덕안궁을 옮겨 칠궁 체제가 완성되었다. 현재는 칠궁으로 통칭되지만, 각 궁의 성립 과정과 연혁은 매우 상이하다.

칠궁에 대한 연구는 육상궁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궁원제의 성립 과정과 의미를 고찰하고¹⁾ 궁원의 건축과 儀物·儀禮 등을 실증하는 연구들이 축적되었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연구원.

1) 정경희, 2004 『조선후기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 23; 임민혁, 2006 『조선후기

다.²⁾ 그 외 선회궁과 경우궁 의 경우 인물 · 건축 · 궁방의 측면에서 연구되었지만,³⁾ 각 궁의 의례적 위상과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시도되지 못했다. 최근 저경궁의 성립과 의례의 변화 과정을 통해, 육상궁과 구분되는 저경궁의 위상과 특징을 규명하는 접근이 이루어졌다.⁴⁾

대빈궁은 宮園制의 宮號가 아닌 ‘대빈’이라는 칭호에 ‘궁’을 덧붙인 형태로서, 칠궁 중 가장 이질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영조는 私親인 숙빈 최씨를 위해 궁원제를 마련했고 ‘육상’을 궁호, ‘昭寧’을 園號로 삼았다. 이후 저경궁과 연호궁 등은 모두 궁원제에 기반하여 내려진 궁호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빈궁의 대빈은 경종 대 私親追報 과정에서 대원군과 같이 ‘大’자를 추가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칭호였다. 따라서 대빈에 붙여진 ‘궁’은 궁원제의 궁이 아닌, 궁방의 궁 혹은 존칭의 궁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 이후 대빈궁은 신주를 모시는 사당인 大嬪祠宇와 통용되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昭顯廟를 昭顯宮, 孝章廟를 孝章宮으로 지

영조의 孝悌 논리와 사친추숭, 『조선시대사학보』 39; 이현진, 2009 「영 · 정조 대 육상궁의 구성과 운영」, 『진단학보』 107; 권용란 2013 「조선시대 왕실 조상신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소현수 외, 2005 「조선시대 사묘(私廟) 칠궁(七宮)의 공간구성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 송인호 · 조은주, 2011 「王室私廟 毓祥宮의 20세기 變化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 박금진, 2018 「조선후기 왕의 私親 宮園 연구: 칠궁과 원소를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해득, 2018 「조선후기 사친추숭과 능원제도」, 『조선시대사학보』 86; 문은희, 2020 「영조 대 毓祥宮式例 · 昭寧園式例의 制定과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심재우, 2009 「조선후기 宣禧宮의 연혁과 소속 庄土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50; 김정미,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경우궁도景祐宮圖’에 관한 연구」, 『문화재』 44; 이미선, 2015 「영조 후궁 嬪李氏의 생애와 위상」, 『역사와 담론』 76.

4) 김윤정, 2023a 「儲慶宮의 성립과 의례적 변화 양상」, 『서울과 역사』 113.

5) 궁원제의 궁인 육상궁, 저경궁 역시 궁방이나 존칭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궁원제는 『궁원식례』의 규정에 따른 제도이고, 이때의 궁은 체백을 모시는 園과 짝을 이뤄 신령을 모시는 사당의 의미로 규정되었다. 반면, 경종 대 새로 건립된 대빈의 사당은 대빈사우로 지칭되었고, 대빈궁은 사당보다는 궁방이나 존칭의 의미가 강했다. 따라서 2장의 서술에서는 사료에 주로 등장하는 대빈사우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영조 대 이후 대빈궁은 대빈사우와 통용되면서 사당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므로, 3장과 4장에서는 대빈궁의 용어를 사용했다. 단, 사당이 아닌 궁방이나 존칭의 의미인 경우는 작은따옴표를 추가하여 ‘대빈 궁’으로 구분했다.

칭하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

대빈궁은 1723년(경종 3) 사친추보를 위해 향교동에 새로 건립된 대빈사우로부터 시작되었다. 소론 준론이 사친추보를 주도하면서, ‘玉山府大嬪’이라는 칭호가 정해졌고 대빈사우라는 명칭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희빈 장씨는 인현왕후를 저주한 죄목으로 사사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보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다.⁷⁾ 영조 즉위 후 대빈사우 철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영조는 추숭이 지나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대빈사우를 존속시켰다. 그러나 궁원제의 대상에서 배제된 대빈사우의 의례적 위상은 돌출적이고 차등적으로 규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대빈궁 의례의 성격과 변화를 중심으로, 그 독특한 연혁과 의례적 차등의 범주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경종 대 성립된 대빈사우 의례의 성격과 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빈사우를 건립한 경종의 사친추보는 “‘존왕적 계체론’에 따른 영조의 사친추숭과 달리 ‘윤서적 계체론’에 근거한 제한적 추숭”⁸⁾ 혹은 “사친의 묘우를 세우고 작호를 추가한 참담한 비례로서 추숭이 아닌 복권”⁹⁾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상반된 인식은 구체적인 의례를 근거로 도출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 대빈 의례를 분석해 보면, 仁嬪·愼妃[단경왕후] 등의 전례를 토대로 사적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私家禮와 王室禮를 절충한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⁰⁾

다음으로, 영·정조 대 대빈 의례의 변화를 배제와 차등의 측면에서 검토했다. 영조 대 궁원제를 통해 사친 후궁의 제사가 國家祀典에 포함된 것과 달리, 대빈

6) 이현진, 앞의 논문, 99면.

7) 대빈사우 건립 논의는 김윤정, 2022 『장희빈張禧嬪 상례와 추보追報 논의의 성격』 『국학연구』 48 참조.

8) 정경희, 앞의 논문, 163-164면.

9) 임민혁, 앞의 논문, 116-117·138면.

10) 이 글에서 사가례는 『家禮』를 중심으로 거행되는 대부사서인의 제사, 왕실례는 국가사전에서 제외된 왕실 구성원들의 제사를 의미한다. 왕실례는 후사없이 사망한 후궁과 왕자, 공주 등의 사당인 수진궁 의례가 대표적이다. 수진궁의 제사는 『국조오례의』나 『춘관통고』 등의 전례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이조에서 차견한 헌관이 아닌 내시가 축문 없이 거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왕이 주관하는 국가사전과의 중요한 차이점이기 때문에, 왕실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은 경종의 사친임에도 궁원제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대빈의 제사는 관청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국방 중심으로 거행되었으므로, 국가제사와의 차이가 심화되었다. 정조는 이러한 대빈 의례를 돌출적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국가제사를 기준으로 재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차등의 원칙에 따라 궁원제보다 위상을 낮춘 대빈 의례가 제도화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종 대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대빈 의례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였다. 정조가 정비한 차등적 의례는 1908년 육궁 합설 시까지 유지되다가 일제강점기 칩궁 체제 하에서 비로소 해소되었다. 조선시대 국가 의례는 차등의 구조를 통해 유교 이념을 구현했지만, 조선의 망국과 더불어 그 원칙과 의미 역시 가치를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대빈궁의 차등적 위상은 신분과 지위의 차이를 반영하는 조선시대 의례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회빈 장씨는 왕의 사친이지만 죄인으로 사사된 인물로, 경종 대 추보 과정에서부터 그 의례적 위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결국 영조 대 궁원제의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왕의 사친임에도 차등적 대우를 받았다. 조선의 망국과 더불어 의례적 차등이 완화되었고, 대빈궁은 칩궁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대빈궁은 끝내 궁원제에 따른 궁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궁원제가 적용된 다른 육궁과는 제도적으로 이질적인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2. 경종 대 대빈사우의 의례적 위상

1722년(경종 2) 임인옥사 이후, 소론 준론의 주장에 따라 칭호를 다시 정하고 사우를 새로 건립하는 방식의 사친추보가 진행되었다. 죄인으로 사사되어 작호를 박탈당한 회빈 장씨를 위해 대빈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마련했고, 본관을 덧붙여 ‘옥산부대빈’이라는 작호를 내렸다. 다음해 5월에는 대빈사우가 완공되었다. 사우는 원래 정릉동 본궁에 세우려고 했으나, 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향교동에 위치하는 822칸의 完豐府院君 집을 新丁銀 1900냥에 구매하여 새로운 터를 마련했다. 감역관과 상지관이 실사하여 건물의 방향을 정했고,

길일을 택일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다. 사우의 제도는 신비사우에 따랐고, 호조와 병조로 하여금 공사 비용을 마련하게 하였다.¹¹⁾ 정조 대 수보 기록에 따르면, 대빈사우는 신주를 안치한 正堂 외에 移安廳, 中排設廳, 造果廳, 내신문, 외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¹²⁾

대빈사우에서 거행하는 제사는 1722년 10월 9일 마련된 후보절목에 규정되어 있었다. 四時祭와 忌祭는 사우에서, 節日祭는 묘소에서 거행하는데, 신비의 제사와 같이 내시가 축문 없이 설행하고 제수는 관청에서 인빈의 예와 같이 봉진하게 하였다. 묘소의 守直軍은 15명으로 정하여 給復하고 戶役을 면제하게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인빈과 신비의 전례가 대빈 제사의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¹³⁾

1722년 10월 16일에는 제사와 관련된 세부 의절이 추가로 마련되었다.¹⁴⁾ 첫째, 사우와 묘소 제사의 길일은 관상감에서 미리 택일하여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가 사우·묘소와 각 관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둘째, 제물은 봉상시에서 마련하고, 셋째, 사우에서 사용하는 평과 생선은 사옹원에서 공급하게 했다. 넷째, 내시부에서 미리 제사에 참석하는 내관을 정하면, 해당 내시가 제사 2일 전에 향과 제물을 차례로 받아 제사지내도록 했다. 다섯째, 사우와 묘소 제사에는 축문과

11) 김윤정, 2022 앞의 논문, 172면.

12) 『승정원일기』 1690책, 정조 15년 5월 庚子.

13) 『경종실록』 경종 2년 10월 壬戌. 영조 대 인빈과 신비는 저경궁과 단의왕후로 승격되면서 의례 역시 전면 개편되었다. 따라서 경종 대 대빈 의례의 기준이 되었던 인빈과 신비의 의례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정조 대 이미 제기되었던 만큼, 대빈 의례를 통해 인빈과 신비의 사례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4) 『光海喪禮錄』(K2-2923), 『壬寅十月十六日』, “一曹單子, 今此玉山府大嬪, 祠宇行四仲朔忌辰祭及墓所四名日祭, 依定奪舉行, 而各項儀節, 參酌磨鍊爲白去乎, 依此施行, 何如. 一, 祠宇及墓所祭吉日, 則觀象監前期推擇報本曹, 則自本曹直爲知委於祠宇墓所及各該司爲白齊. 一, 祭物, 則依前定奪令奉常寺專掌舉行爲白齊. 一, 祠宇祭用雉鮮, 令司饗院上下爲白齊. 一, 各祭參祭內官乙良, 令內侍府前期差定, 行祭前二日, 先受香後受祭物行祭爲白齊. 一, 祠宇與墓所凡干祭祀, 依前定奪, 無祝告辭爲白齊. 一, 各祭時祭物載持馬內官所騎馬香陪馬等, 令兵曹及司僕寺定送爲白齊. 一, 各項祭時所用雜物, 依定式, 行祭內官, 前期報本曹以爲分付各該司爲白齊. 一, 祠宇及墓所祭物, 熟設時所用炭燒木明火炬子等物乙良, 其人當爲進排, 而容入之數, 自本曹定數書入爲白齊. 一, 祠宇墓所鋪陳等物, 依例措備排置, 而五年一改爲白乎矣, 隨毀隨補爲白齊. 一, 祠宇墓所或有無時別祭, 則依愼妃祠宇例, 自本曹直爲移文各司, 使之舉行爲白齊. 一, 未盡條件追後磨鍊爲白齊事啓, 依所啓施行.”

告辭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여섯째, 제사 시 필요한 말은 병조와 사복시에서 담당하고, 일곱째, 제사의 雜物 역시 내관의 보고에 따라 예조에서 해당 관서에 분부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여덟째, 제물 진설 시 사용되는 숯과 땔나무 등의 마련, 아홉째, 鋪陳 등의 설치와 개수의 방식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별제 시에는 신비사우의 전례에 따라, 예조가 바로 해당 관서에 移文하여 거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들은 관상감, 예조, 내시부 등의 관청이 제사의 실무를 담당하고, 봉사시, 사옹원 등의 관청에서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대빈의 제사는 관청의 인적·물적 지원을 받았지만, 경종이 주관하는 국가제사와는 엄격히 구분되었다. 경종은 친아들이지만 왕으로서 종묘를 계승하는 만큼, 대빈사우의 봉사자가 될 수 없었다. 대빈사우는 사친을 위한 私廟로서, 원종의 사친인 인빈의 사우와 동일하게 사가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봉사자 없는 대빈의 제사는 봉사자가 주관하는 인빈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웠다. 이에 봉사자 없는 제사인 신비의 전례를 인용하여, 내시가 축문 없이 거행하는 왕실례의 방식을 적용했다.¹⁵⁾ 이렇게 대빈의 제사는 그 자체로 사가례와 왕실례가 절충된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대빈 제사의 성격을 구체적인 의례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빈사우의 사가례적 위상은 제사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시제 시기의 차이이다. 대빈사우의 사시제는 四仲朔 즉 사계절의 가운데 달인 2월, 5월, 8월, 11월의 初丁日에 지냈다. 가운데 달에 제사지내는 것은 종묘의 사시제를 孟月, 즉 사계절의 첫째 달에 지내는 것과 구분하는 의미가 있다.¹⁶⁾ 초정일은 달에 첫번째로 丁이 든 날로서, 사중삭의 정일에 시제를 지내는 것은 『가례』의 규정과 동일하다.¹⁷⁾ 다만, 『가례』의 시제일은 사중삭의 정일과 亥日

15) 단, 사당을 옮기면서 신주를 移奉하는 의례는, 봉사자 여부와 무관하게 관청의 주도로 거행되었다. 예문관이 축문을 짓고, 이조가 헌관과 집사를 차출했으며, 예조의 당상과 낭청이 배진하는 등의 절목이 갖추어졌다(김윤정, 2022 앞의 논문, 172면).

16) 『常變通攷』 권23, 「祭禮·時祭上」, “時祭用仲月, … 書儀, 凡祭用仲月, … 今國家惟享太廟, 用孟月, 自周六廟漢王廟, 皆用仲月, 以此私家不敢用孟月.”

17) 『家禮』 권7, 「제례·사시제」, “時祭用仲月, 前旬卜日, 下旬之首, 擇來月三旬各一日, 三旬各一日, 或丁或亥.”

중에서 점을 쳐서 정했으므로, 초정일에 특정된 것은 아니었다.

초정일의 제사는 공자를 위한 文廟의 釋奠祭에서 전례를 찾을 수 있다.¹⁸⁾ 중국 수나라에서는 사중월 초정일에 제사를 지냈는데, 당나라 현종 대 춘추중월 초정일로 규정된 이래,¹⁹⁾ 조선에서도 그대로 시행되었다. 또한 『국조오례의』의 ‘대부와 사·서인이 사중월에 시향을 지내는 의주’에 따르면 2품 이상은 상순, 6품 이상은 중순, 7품 이하는 하순으로 날을 점쳐서 시제일을 정했다.²⁰⁾ 따라서 왕실 관련 인물들의 시제는 상순으로 정해졌고, 그 중 정일이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 대 신비사우의 시제 역시 2월과 8월의 초정일로 결정되었다.²¹⁾ 다만 신비는 4대가 지났으므로 사시제를 춘추 두 번의 시제로 축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기신제의 공간과 그에 따른 음식의 차이이다. 사우에서 肉饌을 사용하는 대빈의 기신제는 사가례인 『가례』의 방식과 동일하다.²²⁾ 반면, 국가 기신제의 경우, 전기에는 원묘인 문소전에서 지냈지만, 임진왜란으로 문소전이 소실된 후에는 산릉으로 옮겨졌다.²³⁾ 또한 기신제의 음식 역시 육선을 제외한 素饌으로 차려졌다. 따라서 조선 후기 기신제의 공간과 음식은 국가와 사가의 제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전례로 간주되던 인빈의 경우 봉사자가 제사를 주관하면서, 사가례에 따라 사우에서 육선을 사용하는 기신제를 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빈 외에도 봉사자가 있는 덕흥대원군의 기신제 역시 사우에서 거행되었고, 음식에도 육선인 脯와 醢가 포함되었다.²⁴⁾ 국가에서는 이들의 제사를 경제적으로 지원했지만, 봉사자

18) 『國朝五禮序例』 권1, 「吉禮·時日」, “仲春·仲秋上丁, 釋奠文宣王.”

19) 『孔子家語』 2책, 「新刊素王事紀·歷代追崇事始·二仲丁祀」.

20) 『國朝五禮儀』 권2, 「吉禮·大夫士庶人四仲月時享儀【二品以上上旬, 六品以上中旬, 七品以下下旬, 並卜日. 忌日·俗節·告祭附.】」.

21) 『숙종실록』 권33, 숙종 25년 5월 丁酉, “先是, 愼妃祠節目, 有稟定之命. … 常以春秋二仲朔上丁行祭.”

22) 『家禮』 권7, 「祭禮·忌日」, “詣祠堂奉神主, 出就正寢.”

23) 이현진, 2008 『조선 왕실의 기신제 실행과 변천』 『조선시대사학보』 46, 98면.

24) 『탁지지』 외편권13, 「經費司·禮部·吉禮·式例」, “德興宮【大院君·河東府夫人兩位】每年四仲朔·四名日·忌祭并同, 兩位祭物器數【封納本宮】. … 中脯一貼, ○魚鹽四斤【○脯

가 거행하는 제사의 방식은 사가례를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봉사자 없는 신비의 기신제는 묘소에서 거행되었던 만큼, 음식도 소찬을 사용했을 것이다.²⁵⁾ 신비의 제사는 세자·세자빈의 의례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기신제의 공간이 묘소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빈의 기신제는 신비가 아닌 인빈의 예를 따라 사가례의 위상을 강조한 것이었다.

셋째, 절일제는 사우가 아닌 묘소에서 거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사당에서 절일제를 지내는 『가례』의 규정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가례』와 달리 묘소에서 절일제를 지내는 것은 조선의 관행으로 간주되었으므로,²⁶⁾ 대빈묘의 절일제 역시 사가례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빈 의례의 왕실례적 성격은 ‘내시가 축문 없이 제사하는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왕이 제사의 주체가 되는 국가사전과 달리, 후사 없이 사망한 왕실 구성원들의 제사는 내시가 거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자·세자빈의 廟와 어려서 사망한 왕자·공주 등의 신주를 모신 壽進宮의 제사가 그러했다. 1698년(숙종 24)에 건립된 신비사우의 제사 역시 이러한 방식에 따랐다.

숙종은 신비의 복위가 무산되자, 尊奉의 차원에서 신비의 본종인 愼徽典의 집안에 안치되어 있던 신주를 별묘에 봉안토록 했다. 다만, 신비사우의 제도는 전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義起의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순회세자와 소현세자 사당의 예에 따라 내관이 수직하고 봉상시에서 제수를 갖추어 보내 축문 없이 제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세자의 사당보다 예를 줄이기 위해 신비사우에는 내관이 아닌 守僕이 수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²⁷⁾

이러한 과정에서 신비의 사당 건립과 제사 시행에 비판적인 시각도 제시되었다. 최석정은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名號를 追上하여 사당을 세우고, 사당 이름에 맞게 축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종

醢用忌日·仲朔】.”

25) 『숙종실록』 권33, 숙종 25년 5월 丁酉. “寒食忌辰, 祭墓所, 而凡祠宇時祀及墓祭, 並令內侍, 無祝設行.”

26) 『家禮增解』 권14, 『祭禮·墓祭』. “栗谷曰, 按家禮, 墓祭只於三月擇日行之, 一年一祭之而已, 今俗於四名日, 皆行墓祭, 從俗從厚, 亦無妨. … 尤菴曰, 節日薦廟, 家禮也, 上墓, 東俗也.”

27) 『숙종실록』 권32, 24년 10월 乙丑.

의 유지 없이 신비의 명호를 추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당과 제사가 예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²⁸⁾ 명호 없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자체가 난처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世子廟의 축문 없는 제사 방식이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별도의 명호 없이 신비로 칭하지만, 별묘를 세워 불천위로 삼고 내시가 축문 없이 제사지내는 것으로 존봉의 의미를 보이도록 했다.²⁹⁾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내시가 축문 없이 제사하는 방식’은 세자묘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그런데 1719년(숙종 45) 단의빈의 상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숙종은 세자묘에서 내시가 축문 없이 제사지내면 요절한 대군·왕자 등의 사당인 수진궁의 의례와 차이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세자의 상례를 치르는 3년 동안은 묘소와 혼궁에 당하관을 祭官으로 차정하다가, 3년 이후에는 내관을 보내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3년 후에도 세자·세자빈의 廟·墓에 당하관을 제관으로 차정해 보내고, 축문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신비의 사우와 묘소는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되었다.³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시가 축문 없이 제사하는 방식’은 세자·세자빈의 제사보다 의례를 낮추는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신비의 전례에 따른 대빈의 제사는, 왕실례의 방식을 도입하면서 세자·세자빈과의 차등을 구현한 것이다. 또한

28) 『승정원일기』 381책, 숙종 24년 10월 己巳, “判府事崔錫鼎議中, 有自官建祠, 差官行祭之語, 臣等以爲不然. 蓋愼氏之到今不加追上位號, 以其無中廟之遺旨, 違先儒之定論也. 位號既不可上, 則無位號而建祠者, 考諸歷代古史, 無有可據, 且既建祠, 則當有祠號, 既行祭, 則當有祝辭, 未知將何以稱其祠, 爲祝辭耶? 復號既係非禮, 則建祠行祭, 亦恐未安.”

29) 『승정원일기』 381책, 숙종 24년 10월 庚午, “上曰, … 此是義起之事, 則雖不恰類, 取其儀節之可以做行之者而行之, 似無所妨. 依順懷·昭顯廟, 遣內官守直, 自太常備送祭需之例而爲之, 似可, 無祝文告辭, 亦可用於祠號難便之處矣. 右相李世白曰, 若別爲立祠, 無祝以祭, 以至永世不替, 則雖無別立名號, 豈不爲稍加尊奉之道乎? … 上曰, 歷代無可據之例, 則此是義起之事, 別立祠宇, 永世不替, 此外無他道矣.”

30) 『승정원일기』 512책, 숙종 45년 1월 壬午, “近來昭顯廟, 或有修改之事, 則無祝文, 只令內官告辭, 蓋自順懷廟時, 規例如此, … 本朝, 故世子諸喪, 三年之內, 其禮纔降陵·殿一等, 祥禫之後, 但使內官, 行廟墓之祭, 此與童年早卒大君之祀于壽進宮者無異. … 從今變改, 在所不已, 世子廟·墓, 嬪墓獻官, 令吏曹, 以堂下官差遣, 而只送內官於愼妃祠墓祭, 可也.”; 『승정원일기』 512책, 숙종 45년 1월 甲申, “禮曹啓曰, … 既有遣官行祭之舉, 則又當有祝文, 若以典祀官兼大祝進參, 而祝文則別製以送, 臺監則勿爲差送, 略存比陵·殿差等之意, 恐或得宜, 伏惟上裁. 傳曰, 予意如此, 故只舉此兩款下詢矣. 啓辭得宜, 依爲之.”

축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축문에 필요한 왕의 자칭과 대상의 호칭에 대한 논의가 필요치 않았다. 따라서 영조 대 毓祥廟·육상궁의 축문 관련 논쟁에서 드러난 관계 규정의 문제가 대빈궁 의례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경종 대 사친추보로 마련된 대빈사우 의례는 인빈과 신비 등의 전례를 따라 사가례와 왕실례를 절충한 형태로서, 세자·세자빈 의례보다 격을 낮춘 것이었다. 또한 경종은 전배례를 제외한 정기적인 대빈궁 제사에 일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사전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대빈 의례는 사친을 위한 私廟의 위상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적인 은혜에 보답하는 추보의 의미를 넘어서지 않았다.

3. 영·정조 대 대빈 의례의 배제와 차등

1) 영조 대 궁원제 성립과 대빈의 배제

영조 즉위 이후 경종의 사친추보를 잘못된 추숭으로 간주하면서 취소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영조는 “추숭이 지나침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는 입장에서 지나간 일을 문제삼지 않으려 했으므로, 대빈사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³¹⁾ 영조 역시 사친인 숙빈을 위해 사우를 건립하는 상황에서, 先兄인 경종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다. 대신 숙빈을 위한 의례는 인빈의 전례를 따른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고, 대빈이라는 칭호 대신 숙종이 내려준 작호인 숙빈을 고수하면서 대빈사우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³²⁾

이진검이 아뢰기를, “... 대행왕(경종) 대의 사친 尊奉은 이미 先朝(숙종)께서 내려주신 작호를 사용할 수 없어 별도로 名號를 만들었으니, 원용할 만한 예가 아닌 듯합니다. 인조 대의 일을 따라 거행할지, 선조 대의 일을 따라 거행할지를 아뢰어 상의 재결을 받아야 할 듯합니다. 새로 祠廟를 세우고 官에서 제수를 공급하고 墓道를 넓히고 守戶를 두는 등의 일은 한결같이 인빈의 예대로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만 작호에 관한 일은 상의 지시가 있어야만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이 이르기

31) 『영조실록』 권4, 영조 1년 3월 癸亥.

32) 『영조실록』 권2, 즉위년 11월 庚申; 『승정원일기』 607책, 영조 1년 12월 庚寅.

를, “선조 대에 덕흥군과 군부인을 추승한 것은 지금과 다르니,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大’ 자를 썼다. 나의 사친은 이미 先朝 대의 작호가 있으니 고칠 필요가 없다는 뜻을 조금 전에 이미 말하였다. … 어찌 반드시 ‘대’ 자를 썼다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도가 되겠는가. 인빈의 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³³⁾

그러나 숙빈사우가 毓祥廟로 승격되기 전까지, 숙빈사우와 대빈사우의 의례는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인다. 숙빈사우에 봉사자가 없어 제사에 정성이 부족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내관들이 손을 씻지 않아 신주에 흔적을 남기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³⁴⁾ 영조는 인빈의 전례를 강조했지만, 봉사자가 있는 인빈의 제사와 달리 봉사자 없는 숙빈의 제사는 대빈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내시가 축문 없이 거행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축문의 호칭과 자칭에 대한 논의는 1744년(영조 20) 숙빈사우가 육상묘로 승격되는 시점에 처음으로 등장한다.³⁵⁾ 영조는 육상묘에 올릴 축문을 작성하게 하고, 축문을 갖춘 제사의 거행을 위해 祭官을 차정했다. 1753년(영조 29) 궁원제가 성립되면서, 육상궁은 私廟가 아닌 官祭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영조는 축문의 호칭을 ‘私親’이 아닌 ‘先妣’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⁶⁾ 궁원제의 규정인 『궁원식례』는 육상궁 의물의 배치와 형식부터 제사의 시기와 절차 및 담당자 등을 기록하고 있다.³⁷⁾ 이러한 규정은 궁원제가 국가사전의 위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궁원제는 원종의 사친인 인빈에게 적용되었고, 정조 대 간행된 『춘관통고』의 길례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궁원제에서 배제된 대빈사우의 의례는 국가사전에 포함되지 못했고 돌출적인 형태로 남게 되었다.

33) 『승정원일기』 574책, 영조 즉위년 9월 辛酉.

34) 『승정원일기』 970책, 영조 20년 3월 己丑, “上曰, … 國家祀事, 不過威儀, 豈如私家之致精致潔乎? 近來主身有垢痕, 此則中官輩不爲盥手而然也. 慈殿聞此後, 以神不來歆爲教矣. 所謂守衛軍形狀奇怪者, 多來廟庭, 祭物必藏囊而去, 以此觀之, 則情禮之稱當, 終不如定奉祀也.”

35) 『승정원일기』 970책, 영조 20년 3월 庚寅, “未定奉祀之前, 親祭及遣官致祭, 不過祝式, 而無儀註之可論, 有何講定之持難乎? 應洙曰, 祝式至重, 故然矣.”

36) 『毓祥宮昭寧園式例』(K2-2474), 『御製小識』, “先妣乎其宜遵守而勿撓焉, 今既封園而官祭.”; 『승정원일기』 1099책, 영조 29년 10월 癸卯, “上曰, 予臥而思之, 忽有悟焉. 前則稱私廟矣, 今則不稱私廟, 既行官祭, 而尙有私親二字, 事涉如何? 私家亦稱先妣云, 此則異於妃字矣.”

37) 문은희, 앞의 논문, 18-30면.

국가사전에 포함된 육상궁의 제사는 사묘인 대빈사우의 제사와 차이를 보인다. 기신제는 육상궁이 아닌 소령원에서 소찬으로 지냈다. 절일제는 육상궁과 소령원에서 각각 거행되었는데, 소령원에서는 소찬으로 지냈다.³⁸⁾ 이러한 방식은 종묘와 산릉에서 절일제를 지내는 국가사전의 형식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그러나 대빈의 기신제는 그대로 사우에서 육선으로 거행되었고, 절일제 역시 묘소에서만 지내는 방식이었다.

한편, 육상궁의 사시제는 종묘의 사맹삭과 구분하여, 사중삭의 춘분·하지·추분·동지, 즉 二至·二分에 지냈다. 이지·이분은 사마광 『서의』의 “만약 날을 잡을 겨를이 없으면 다만 孟詵의 『祭儀』에 따라 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로 하는 것이 일을 하기에 편하다.”는 글에 근거한다. 이 내용은 『가례』의 附註에 인용되었고, 주자 역시 사마광의 의견에 동의했다.⁴⁰⁾ 澤堂 李植(1584-1647)을 포함한 조선학자들도 이지·이분의 사용을 인정했다.⁴¹⁾ 영조는 연잉군 시절 숙빈의 제사를 받들 때부터 편리함의 차원에서 이지·이분을 시제일로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²⁾

그런데 영조는 이지·이분을 육상궁에 이어 저경궁과 효장묘·의소묘 등의 시제일로 확대 적용했다.⁴³⁾ 世子廟의 경우, 『국조오례의』에서는 의경세자의 懿廟

38) 『毓祥宮昭寧園式例』(K2-2477), 『毓祥宮昭寧園大小祭享陳設圖式』, “毓祥宮時祭節祀告由祭祭物陳設圖 … 昭寧園忌辰祭節祀告由祭祭物陳設圖”

39) 『國朝五禮序例』 권1, 「吉禮·時日」, “朔望·俗節【正朝·寒食·端午·秋夕·冬至·臘】享宗廟【臘偏祭七祀, 親享則并祭配享功臣.】·文昭殿·懿廟·山陵【去廟則只享寒食, 敬陵則不在此例.】”

40) 『家禮』 권7, 「제례·사시제」, “司馬溫公曰, … 若不暇卜日, 則止, 依孟儀用分, 至於事亦便也, … 朱子曰, 卜日無定, 慮有不虔, 司馬公云, 只用分至亦可.”

41) 『朽淺集』 권5, 「문답·제례」, “宗海嘗問于鄭先生, 則亦曰, 三旬丁·亥, 或分·至, 隨所擇而定之云.”

42) 『승정원일기』 656책, 영조 4년 2월 戊申, “自私邸時, 祭祀一節, 豈不欲豐盛, 而有不合於禮者, 則不可常行, 而亦近於褻慢, 故不無酌定, 而聞東平尉家祭, 則定器數, 而見李植所著澤堂集, 則祭規, 以春分·秋分·夏至·冬至行之, 而其豐約亦有所酌定矣.”; 『승정원일기』 1095책, 영조 29년 6월 庚戌, “傳曰, 毓祥宮仲朔祭, 春分·秋分·夏至·冬至, 其行已久, 以此日仍爲舉行.”

43) 『승정원일기』 1120책, 영조 31년 6월 辛酉, “又以禮曹言啓曰, 毓祥宮仲朔時祭, 以春分·夏至·秋分·冬至日設行矣, 今此儲慶宮仲朔時祭, 亦依此定式舉行乎? 敢稟, 傳曰, 依爲之.”

시제를 종묘와 마찬가지로 사맹일의 상순으로 점을 쳐서 정했다.⁴⁴⁾ 그러나 조선 후기 세자묘의 시제는 ‘중삭제’로 변경되었고, 정일에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⁴⁵⁾ 1755년(영조 31)부터 영조의 결정에 따라 궁원제를 적용하는 후궁 사친과 세자·세자빈의 사시제는 이지·이분에 거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⁴⁶⁾ 이지·이분의 사시제는 사가례의 방식이지만, 종묘와의 의례적 차등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국가사전의 규정으로 성문화되었다. 그러나 대빈의 사시제는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되었다.

〈표 1〉 조선후기 제사 공간 비교

	사당(신주)				능원묘(채백)		
	종묘	육상궁	대빈사우 ⁴⁷⁾	『가례』	능	소령원	대빈묘
사시제	○(사맹삭상순 택일)	○(이지·이분)	○(사중삭 초정일)	○(사중삭 丁·亥/이지·이분)			
기신제			○	○	○	○	
절일제	○(+납일)	○		○	○(+납일)	○	○

1763년(영조 39)에 영조는 국가제사를 재정비하는 癸未釐正을 시행했고, 그 결과를 정리한 『太常誌』(奎貴865-v.1-2)가 1766년(영조 42)에 편찬되었다. 계미이정은 分等の 원칙에 따라 제사의 祭品을 정비한 것으로, 영조는 “圖式이 정연

孝章·懿昭宮, 今後亦依此舉行.”

44) 『國朝五禮序例』 권1, 「吉禮·時日」, “四孟月上旬, 享宗廟【七祀春, 司命及戶夏, 竈秋, 門及厲冬行, 各因時享, 祭之. ○ 配享功臣, 四時皆祭, 攝事則只祭冬享.】·文昭殿·懿廟·山陵.”

45) 의소묘의 시제일과 관련한 논의에서, “효순현빈의 시제는 정일에 지냈다.”는 영조의 주장과 “본래 택일하여 행한다.”는 예관의 서술이 엇갈리고 있다. 결론을 확인할 수 없지만, 시제일로 정일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승정원일기』 1103책, 영조 30년 2월 癸未, “上曰, 仲朔祭即丁日也, 懿昭朔祭, 何以今日行之乎? … 上曰, 孝純祭時, 用丁日, 亦不卜日, 此當則彼非矣, 此得則彼失也, 必居一於此矣. 上番出去, 招問禮吏, 可也. 允鉤出而復命曰, 本來擇日行之云矣.”).

46) 이후 효명세자와 수빈박씨의 경우도, 이러한 규정에 따랐다.

47) 대빈사우의 제사는 1791년(정조 15) 제도 정비 이전의 경우이고, 이후에는 기신제의 공간이 대빈묘로 변경되었다(3장 2절 참조).

하고 典禮가 명확하다.”라고 평가했다. 계미이정에서 규정된 제품의 규격과 종류를 통해, 궁원제는 세자·세자빈의 묘묘제보다 높은 위상을 확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⁸⁾

『태상지』에서 ‘대빈궁’은 궁원제와 구분되어, 덕흥궁, 광해군, 왕후고비와 함께 ‘各宮’으로 분류되었다.⁴⁹⁾ ‘대빈궁’의 ‘궁’은 궁원제의 ‘궁’이 아닌 궁방의 의미였다. 『속대전』의 규정대로, 궁결을 지급받는 大王私親宮에 해당되었다.⁵⁰⁾ 봉상시는 ‘대빈궁’에 절일제[名日祭], 사시제[仲朔祭], 기신제[忌日祭]의 祭物로 밀가루[上末], 꿀[淸蜜], 참기름[眞油] 등의 재료를 지원했는데,⁵¹⁾ 구체적인 제사 음식의 종류와 숫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각궁 외 종묘, 궁원 등의 제사에는 음식의 종류와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대빈궁’은 각궁에 포함되었지만, 봉사자의 부재는 덕흥궁 등 다른 궁방과의 중요한 차이점이었다. 심지어 광해군 부부의 제사 역시 외손이 봉사자가 되어 거행했다.⁵²⁾ ‘대빈궁’을 제외한 각궁의 경우 봉사자가 봉상사에서 제물을 지원받아 제사를 주관했다. 그러나 대빈의 제사는 내시와 궁방 소속의 인원들이 거행하는 방식이었다.

영조 대 대빈은 궁원제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국가사전 내에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빈 의례는 궁방 중심으로 자체 운영되면서, 국가제사와 다른 돌출적인 형태로 방치되었다. 경종 대 마련된 절목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조 대 대빈 의례의 제도적 정비도 시행되었다. 정조는 국가제사를 기준으로 돌출적인 대빈 의례를 정비했지만, 내시가 축문 없이 제사하는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국가사전에 포함된 궁원제와의 차등을 강조했다.

48) 김윤정, 2023b 「조선시대 유밀과(油蜜果)의 의례적 상징과 제도화」 『민속학연구』 52, 150-153면.

49) 『太常誌』(奎貴865-v.1-2), 『太常誌目錄』, “卷之三, 祀典, 徽寧殿, 宮【儲慶, 毓祥】, 園【順康, 昭寧】, 廟【昭顯, 孝章, 懿昭】, … 各宮【德興, 玉山, 光海, 王后考妣】.

50) 『續大典』 권2, 「戶典·諸田·宮房田」, “大王私親宮, 五百結, 【當寧時, 一千結】.”

51) 『太常誌』(奎貴865-v.1-2) 권3, 「祀典」, “大嬪宮, 名日仲朔忌日祭物, 上末【二十二斤十二兩三錢二分四厘】, 淸蜜【九升四合一勺】, 眞油【七升八合九勺】, 乾飯【四升二合四勺】, 芝草【三兩二錢】, 黑糖【五斤】, 沙粉白米【一合】… 四燭【二丁, 已上二十九種, 名日仲朔忌同.】… 海衣【二貼, 已上九種只用忌日祭.】”

52) 『영조실록』 권66, 영조 23년 12월 丁丑.

2) 정조 대 대빈 의례의 정비와 차등화

정조는 즉위 직후 제사 규정을 정비하고 4대가 지난 궁방을 정리하면서, ‘대빈궁’ 宮結의 환속을 결정했다. ‘대빈궁’은 4대가 지나지 않았지만, 정조는 奉常寺에서 대빈의 제사에 제물을 올리고 次知中官도 있다는 점에서 궁결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궁결을 환속하고, 관련 규정도 세금을 내는 다른 궁방과 동일하게 개정했다.⁵³⁾ 따라서 제물을 진설하던 本宮의 奴子는 衛軍으로, 물건을 운반하던 사복시의 말은 驛馬로 변경되었다.⁵⁴⁾

그런데 궁결 환속 이후 궁방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대빈궁 의례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궁결의 환속으로 인해 궁에 소속된 宮人과 下屬들은 料布를 받지 못했음에도, 담당 내시는 궁인과 하숙에게 계속 제사를 대행시켰고 의례가 정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양상은 이미 궁방 중심으로 대빈 제사가 거행되어 왔고, 내시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정조는 “‘대빈궁’의 사우는 일의 체모가 막중하므로 先朝 때부터 時節享事를 만드시 儀註대로 설행”했음을 지적하면서, 선조의 受敎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대빈의 제사를 재정비했다.

이에 사우와 묘소의 제사에 쓰는 祭品은 봉상사에서 준비하고, 사우의 증삭제와 묘의 절일제는 내시가 주관하는 것을 재차 하명했다. 불법적으로 요포가 없는 궁인과 하숙에게 대신 행하게 할 경우, 내시부에서 각별히 논죄할 것을 엄명했다. 또한 수직중관 2인과 수복 2인을 차정하여 사우를 관리하게 하였다. 궁결 환속 시 없던 雇軍은 예전과 같이 4명을 배치하도록 명령했다.⁵⁵⁾ 궁방의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대빈 의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했던 것

53) 『일성록』, 정조 즉위년 4월 辛亥, “至於大嬪房, 既有奉常寺祭物以時享祀, 又有次知中官, 不必更置宮房. 田結一體還屬, 其他舉行, 亦遵出稅他宮房例事.”

54) 『일성록』, 정조 1년 1월 丁丑.

55) 『일성록』, 정조 8년 2월 壬戌, “敎曰, 大嬪宮祠宇, 事體莫重, 自在先朝, 時節享祀, 必命如儀設行. 近聞宮結代盡出稅後, 該宮所屬, 以其無料布, 舉皆渙散, 主管無人, 欠潔之事, 不一而足云. 大有違於先朝受敎, 此事不可無一番定制. 宮享墓享饌品用小牢, 既自太常措辦, 而奠獻之人, 褻慢莫甚. 此後仲朔宮享, 節日墓享, 中使主管行事, 又復稱頌. 潛令無料之宮人下屬替行, 自內侍府各別論罪之意嚴飭. 丙申年以守直官隸事有定式, 而尙無文蹟, 不得舉行云. 守直中官二人, 以無料宮屬中差定, 折受出稅時, 雇軍混罷, 此則依前仍置, 而名數以四名舉行事, 分付各該曹.”

이다. 실제로 1789년(정조 13)에 내수사와 호조가 담당하여 대빈사우의 누수와 무너진 담장 등을 대거 수리했다.⁵⁶⁾

1791년(정조 15)에는 광주에 위치하는 대빈묘의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⁵⁷⁾ 당시 대빈묘는 莎草의 손상과 曲牆의 훼손이 심각했고, 安香廳과 齋室 이하 여러 곳이 무너져 황폐해진 상황이었다. 또한 경계 내에서 불법적인 경작이 이루어질 만큼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정조는 즉각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시를 보내 致祭하고 지방관으로 하여금 개수를 거행한 후 장계로 보고하라고 하였다.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수사에서 墓監 2명을 차출하고, 位田을 지급하여 수직하게 하였다. 묘감이 대빈묘의 상태를 巡營에 보고하고 운영에서는 해당 지방관에게 분부하여 개수하게 하였다. 또한 수묘군 중 2명을 수복으로 삼아 청소하고 관리하게 했다. 이후 대빈궁은 2년에 한 번씩 3월에 낭관을 보내 간심한 후 수보하고, 대빈묘는 봄·가을로 지방관이 간심한 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례를 정했다.⁵⁸⁾ 이에 『만기요람』과 『육전조례』 등에 정기적인 간심의 규정이 수록되었다.⁵⁹⁾

이러한 정비 과정에서 정조는 국가제사와 비교하여 돌출적인 대빈 의례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교하기를, “대빈의 묘도와 사우를 이미 수선하라고 명하고 이어 봉상시의 제품을 진배하는 규칙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墓祭는 四名日에 지내고 廟祭는 四仲朔에 지내는 것은 참으로 옳지만 기신제를 廟로 옮겨 행한 것은 자못 예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廟祭에 노루고기를 쓰는 것도 근래의 규칙에 어긋난다. 기신제는 묘소로 옮

56) 『승정원일기』 1660책, 정조 13년 7월 甲午, “徐鼎修, 以戶曹言啓曰, 因內需司啓下牒呈, 大嬪宮祠宇及移安廳內外三間雨漏處, 造果廳頽落處, 南牆三間, 西牆八間頽圯處, 修改之役, 今已完畢之意, 敢啓.”

57) 『일성록』, 정조 15년 5월 丙戌.

58) 『일성록』, 정조 15년 5월 己亥.

59) 『만기요람』 4책, 『財用編·戶曹各掌事例·別例房·奉審【附修改】』, “間一年, … 大嬪宮【在鄉校洞, 玉山府大嬪張氏廟, ○三月, 戶曹郎廳奉審後, 有頽處, 草記, ○修改則營繕官員看檢.】”; 『六典條例』 권3, 『戶典·戶曹別例房·奉審修改』, “大嬪宮【玉山大嬪張氏廟】間一年三月, 郎廳奉審後, 有無頽, 並草記入啓, 【修改, 則繕工監役看檢.】”

거 설행하되 다른 예에 따라 오로지 素饌만 쓰고, 묘제의 제품으로 노루고기를 쓰는 것은 돼지고기로 대신 쓰도록 하라. 제품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니, 호조 판서는 연석에서 물러간 뒤에 전례를 상고하여 만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치를 따져서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⁶⁰⁾

첫째, 사우인 대빈궁에서 기신제를 지내는 문제였다. 정조는 사우에서 기신제를 지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인식했고, 陵·園의 예에 따라 묘소에서 소찬을 사용하여 기신제를 지내도록 했다. 사가례에 따른 대빈 제사가 국가제사를 기준으로 개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빈궁에서 노루고기를 제품으로 사용하는 문제였다. 정조는 근래의 규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돼지고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노루고기의 사용은 인빈의 전례를 따른 것으로, 대빈과 숙빈의 제사에 그대로 적용되었다.⁶¹⁾ 궁원제가 성립되는 1751년(영조 29)에 영조는 육상궁의 노루고기를 돼지고기로 변경했다. 그러나 대빈궁에서 여전히 노루고기를 사용한 것은 대빈궁 제사가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에서 배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77년(정조 1)에 이미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대빈궁의 노루고기 사용은 이후 15년간 지속되었다.⁶²⁾

대빈 의례의 돌출적 위상을 확인한 정조는 호조판서에게 대빈의 祭品을 이치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한달만인 6월 26일에 호조판서 조정진은 대빈묘의 제품을 세자·세자빈의 墓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논쟁의 소지가 있음을 아뢰었다. 묘의 제품 자체가 제각각으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원제의 대상인 순강원, 수길원, 연호궁 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정조는 대빈묘의 제품이 원보다 많을 수는 없다는 조정진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조정진에게 대신들과 의논하여 제품의 수를 바로잡고 別單을 작성하여

60) 『일성록』, 정조 15년 5월 庚子.

61) 『光海喪謚錄』, 「壬寅十月十六日」, “一曹啓曰, 今此玉山府大嬪祭用生獐, 依仁嬪祭需例進排事, 所當分付, … 傳曰, 依仁嬪例爲之.”

62) 『승정원일기』 1400책, 정조 1년 5월 甲午. “弘淳曰, 向來以玉山大嬪房祭享所用生獐事陳稟, 而有毓祥宮祭享所用考稟之命矣. 毓祥宮祭享所用, 本以生獐, 而癸酉後, 改以生猪磨鍊, 四仲朔祭享, 各用一口, 四名日則無磨鍊之事矣. 獐猪變通, 似有意義, 祭物酌定, 事體亦重, 令禮曹稟處, 何如? 上曰, 依爲之.”

들이도록 명령했다.⁶³⁾

다음날 조정진은 사우의 사중삭제와 묘소의 사명일제·기신제의 제품을 별단으로 올렸다.⁶⁴⁾ 정조는 먼저, 대빈묘의 제품이 신비와 인빈의 제사 의절을 따른 것인지를 물었고, 조정진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영조 대 이미 신비는 단경왕후로, 인빈은 저경궁으로 승격되었으므로, 대빈 의례의 기준이 될 수 없었다. 이에 정조는 “당초의 수교에서는 신비와 인빈으로 기준을 삼게 하였으나 지금은 일의 체모가 그때와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정조는 대빈 의례를 원보다 낮추고 묘보다 높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정진은 “묘소의 제품을 원소의 제품보다 등급을 높인 경우가 있는데, 당초 규례를 정한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묘의 제품이 저경궁, 연호궁보다 많은 문제를 지적했다. 결국 조정진은 저경궁보다 낮추는 수준에서 대빈의 제품을 마련했고, 정조의 윤허를 얻어 새로운 규정이 성립되었다.

단, 조정진이 제기한 의문, 즉 세자·세자빈 廟墓의 제품이 궁원인 저경궁·순강원 등의 제품보다 많은 이유에 대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혼란은 정조 즉위 후 진행된 궁원의 차등화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전술했듯이, 영조 대 계미이정에서 후궁 사친의 궁원과 세자·세자빈 묘묘의 제품은 차등적으로 규정되었다. 이 때의 궁원은 육상궁·소령원, 저경궁·순강원 뿐이었고, 소현세자·효장세자 등의 묘묘보다 많은 제품을 사용했다. 그런데 정조는 사도세자를 위한 경모궁을 조성하면서 그 의례적 위상을 육상궁보다 높였다. 반면, 연호궁은 추존왕인 眞宗의 사친이고, 저경궁은 4대가 지나 조천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품을 줄였다.⁶⁵⁾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호궁·수길원과 저경궁·순강원의

63) 『승정원일기』 1691책, 정조 15년 6월 己巳. “鼎鑪進前奏曰, 大嬪墓祭品, 取倣於各墓所祭品後, 登筵稟處事, 命下矣. 謹依下教, 取倣於各墓所祭品, 則器數之多寡, 或有不一, 無以適從, 而比倣於順康園·綏吉園·延祐宮祭品, 則反有一二器差多者, 臣意則大嬪墓祭品, 不可加等於園所祭品, 故敢此仰達矣. 上曰, 卿言亦是矣. 卿其就議大臣後, 釐正器數, 成別單以入, 可也.”

64) 『승정원일기』 1691책, 정조 15년 6월 庚午.

65) 김윤정, 2023b 앞의 논문, 154면.

제품이 세자·세자빈 廟墓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된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대빈궁 사시제의 기수는 小朴桂 1, 紅散子 1, 白散子 1기, 餅 2(切餅·賓煮), 湯 2(豆泡·생선), 片肉 1(豬肉), 炙 1(저육), 細麪 1, 醋薑 1, 實果 3기에, 淸酒 1병, 울창주[鬱金酒] 1병, 白幣 1단, 四燭 2丁으로 구성되었다.⁶⁶⁾ 대빈궁 사시제의 제품 수는 육상궁과 세자묘 보다 현격히 적었고, 저경궁·연호궁 보다도 1·4개를 줄인 것이었다.

〈표 2〉 『제물등록』(K2-2556) 時祭의 횟수와 祭品

제품 횟수	중 박 계	소 박 계	산 자	다 식	병	탕	적	편 육	전 유 어	세 면	초 강	실 과	청 주	울 금 주	초	백 폐	총
대빈방 ⁶⁷⁾ (4회)		1	2		2	2	1	1		1	1	3	1		2		17
저경궁 (2회)		1	2		1	2	1	1	1	1	1	3	1	1	3	1	20
연호궁 (4회)		1	2		3	2	1	2	1	1	1	3	1	1	3	1	23
의소묘 문희묘 (4회)		3	3		3	2	3	2	1	1	1	4	1	1	3	1	29
육상궁 (4회)	3		4	4	3	2	3	2	1	1	1	4	1	1	3	1	34

그런데 곧이어 대빈의 제품에서 백폐와 울창주를 제거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⁶⁸⁾ 폐백과 울창주의 경우, “이조에서 差遣한 獻官이 없으므로 봉상시에서 진

66) 대빈사우 사중삭의 제품 중 실과의 경우, 『승정원일기』에는 3기인 반면, 『일성록』에는 1기로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서 조정진이 올린 별단을 『일성록』에 옮겨 적게 했던 만큼 『일성록』 전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 『제물등록』 등에 모두 실과 3기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따랐다.

67) 『제물등록』에서 대빈궁은 大嬪房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조 대는 대빈궁, 대빈사우, 대빈방 등이 통용되었는데, 궁방으로서의 ‘대빈궁’이 제사의 공간인 사우를 지칭하는 대빈궁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준다.

68) 『일성록』, 정조 15년 8월 丁卯. “政院以大嬪宮四仲朔祭享香祝及灌地筒入排等事, 考例磨鍊啓稟. 敎以幣幣既無吏曹差遣之獻官, 設有太常之進排, 不可爲之, 勿爲進排事分付. 不當有

배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니 진배하지 말라고 분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대빈 의례는 헌관이 아닌 내시가 거행하였으므로, 헌관이 주관하는 제사와 같이 폐백과 울창주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있어서 안 되는 폐백과 울창주”는 대빈의 제품에서 제외되었고, 정조 대 편찬된 『제물등록』(K2-2556)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다만, 향은 없을 수 없으므로 일 년 동안 쓸 향을 연말에 한번 傳香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

이러한 결정은 대빈의 제사가 국가사전에 포함된 궁원의 제사와 이질적임을 명시한 것이다. 대빈은 경종의 사친으로 별도의 봉사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 관리가 필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죄인으로 사사된 대빈의 위상은 의례적 차등으로 구현되어야 했다. 따라서 헌관 대신 내시를 파견하고 제품을 줄이며 백폐와 울창주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했다. 정조 대 대빈 의례의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제물등록』(K2-2556)에서 대빈의 제품은 영조 대 편찬된 『태상지』(奎賁865-v.1-2)와 마찬가지로 궁원과 구분되어 덕흥대원군 부부의 다음에 수록되었다. 『사전사례편고』(K2-2538)에서도 대빈궁은 덕흥대원군, 선희궁 등과 함께 私宮으로 분류되었다.⁶⁹⁾

정조의 궁궐 환속 결정은 봉사자 없이 궁방 소속 인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빈 제사의 파행을 초래했다. 결국 국가 차원의 관리와 개입이 요구되었고, 대빈궁의 의례가 국가제사의 기준에 따라 정비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을 세자·세자빈의 묘묘 뿐만 아니라 조천한 궁원 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의례적 차등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기존의 왕실례적 성격을 고수하여, 헌관이 아닌 내시가 제사를 주관하고 폐백과 울창주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러한 측면은 궁원·묘묘 제사와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국가사전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정비된 대빈 의례는 정조의 수교이자 새로운 제도로써 계승되었다. 순조 대 대빈 의례를 궁·묘의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정조의 수

之幣鬯雖減，有祭而無香豈，有如許禮意，一年所用香，令香室每歲末都封傳香事定式施行.”

69) 『祭物膳錄』(K2-2556) 1책, “德興大院君, 河東府夫人【忌日名日仲朔祭同】… 大嬪墓忌辰祭 … 大嬪墓四名日祭 … 大嬪墓四名日祭 … 王后本宗考妣忌日仲朔名日祭”; 『祀典事例便考』(K2-2538), 『清蜜元準折今封進都數【附和宮進排】』, “私宮【德興宮墓, 大嬪宮墓, 宣禧宮墓, 宜嬪宮墓】進排合三十一斗五合三夕.”

교를 따라야한다는 주장에 따라 무산되었다. 대빈 의례는 “내시를 차견하는 제향”으로서 이조에서 헌관을 차정하는 국가사전과는 구분되었고, 이 경우 호조에 서 정례로 거행하는 규례가 없다는 원칙이 강조되었다.⁷⁰⁾

4. 고종 대 이후 의례적 분등의 완화

1870년(고종 7)에 대빈궁은 육상궁의 별묘로 이봉되었다. 고종은 1월 2일 종묘와 경모궁에 나아가 전알을 마친 후, 각 궁을 처음 세울 때와 달리 “이제는 한 곳의 별묘로 숭奉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는 점에서 궁과 묘의 합봉을 제기했다. 다음날 흥선대원군의 재가를 거쳐 합봉이 결정되었다. 이에 대빈궁은 연호궁, 선희궁, 宜嬪廟와 함께 육상궁 내의 별묘, 寧嬪과 和嬪의 사우인 경우궁 내의 별묘, 문효세자의 문희묘는 의소묘 내의 별묘로 합봉하도록 했다.⁷¹⁾

대빈궁 등의 합봉을 위해 터를 닦는 공사가 1월 21일부터 시작되었고, 이안과 환안 시 고유제가 정해졌다.⁷²⁾ 각 궁의 定礎는 4월 9일, 立柱는 4월 13일, 上樑은 4월 14일 묘시로 결정되었다.⁷³⁾ 연호궁과 선희궁의 경우 신주를 옮겨 모시는 이봉 절차가 5월 14일에 이루어졌다. 대빈궁의 이봉 날짜는 확인되지 않지만, 5월 18일로 예정된 展拜禮 전에는 절차가 완료되었을 것이다.

5월 18일의 폭우로 인해, 문희묘와 육상궁의 전배례는 20일로 연기되었다.⁷⁴⁾ 5월 20일의 전배례는 문희묘-의소묘-육상궁-연호궁-선희궁 순으로 거행되었다.

70) 『승정원일기』 1898책, 순조 5년 8월 戊申. “達淳曰, 大嬪宮守直內官, 以本宮祭享所用各樣物種及禁火所用, 一依他宮廟祭享定例磨鍊事, 手本啓下矣. 取考文書, 則先朝辛亥, 因下敕, 本宮祭品, 臣曹堂上, 就議大臣, 釐正磨鍊, 別單啓下, 而批旨內, 有裁酌磨鍊, 甚爲得宜, 依此定式之命, 故至今遵行, 而今此手本各種, 既不入於伊時釐正之中. 且內寺差遣之宮享, 自臣曹元無定例舉行之規, 手本內辭緣, 置之, 何如? 上曰, 依爲之.”

71) 『승정원일기』 2747책, 고종 7년 1월 戊辰: 1월 己巳. 저경궁도 합설대상이었으나, 대왕대비 慈敎에 따라 제외되었다(『고종실록』 권7, 고종 7년 1월 戊子).

72) 『승정원일기』 2747책, 고종 7년 1월 丙戌.

73) 『승정원일기』 2748책, 고종 7년 2월 壬戌.

74) 『승정원일기』 2751책, 고종 7년 5월 癸未.

육상궁에 합설된 ‘禧嬪廟’와 의빈묘에는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게 했는데,⁷⁵⁾ 이러한 방식은 이후 전배례에서 정례화되었다.⁷⁶⁾ 대빈궁은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과 같은 공간에 위치했지만, 왕이 친행하는 전배례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육상궁 등의 전배례 절차에서 대빈궁은 의빈묘와 마찬가지로 ‘궁’이 아닌 대빈묘 혹은 희빈묘로 지칭되었다. 이러한 칭호의 변용은 궁원제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기 위한 시도로 추정된다.

또한, 합봉과 동시에 대빈 의례에 4대 조친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불천위가 아닌 경우, 4대가 지난 사당에서는 사시제를 춘추 2회로 줄이고 절일제를 폐지하며, 묘소에서는 한식제만 지내는 것으로 예를 줄였다. 고종 즉위로 인해 4대가 지나 조친의 대상이 된 의소세손에게 아직 조친이 적용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해진 제도이자 제왕의 家法인 조친을 바로 거행하도록 했다. 대빈궁의 경우는 4대가 지난 지 오래임에도 여전히 사시제를 지내고 있었으므로, 저경궁·연호궁의 전례대로 춘추에만 제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⁷⁷⁾ 대빈궁의 사시제가 관행적으로 거행된 것은 그만큼 대빈궁의 의례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이후 고종은 1871년(고종 8) 신미이정을 통해 세자·세자빈의 묘묘와 후궁 사친의 궁원 제도를 정비했다. “세자나 세손은 事體가 자별한데, 의절이 도리어 각 궁보다 하찮게 된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는 인식에 따라 墓를 園으로 승격시켜 새로운 廟園 제도를 확립했다.⁷⁸⁾ 신미이정의 결과가 1873년(고종 10) 중간된 『태상지』(K2-2043)에 수록되었다. 중간된 『태상지』에서는 廟의 위상을 높여 후궁 사친의 宮 앞에 수록했다. 또한 묘의 제품과 불천위인 육상궁·경우궁의 제품을 절충하여 통일시켰다. 묘의 제품에서 소박계가 중박계로 변경되었고, 다

75) 『승정원일기』 2751책, 고종 7년 5월 乙酉.

76) 『승정원일기』 2775책, 고종 9년 4월 乙卯; 『승정원일기』 2786책, 고종 10년 3월 庚子; 『승정원일기』 2811책, 고종 12년 3월 丙寅.

77) 『승정원일기』 2747책, 고종 7년 1월 己巳. 이때부터 대빈궁에서 춘분·추분의 춘추제가 거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빈묘에서는 기신제가 폐지되고 절일제 중 한식제만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78) 『승정원일기』 2759책, 고종 7년 12월 庚午.

식 2기가 추가되었다. 반면 육상궁·경우궁 제품은 산자 1, 다식 2기가 줄어들었다. 저경궁과 연호궁의 경우, 제품의 수는 그대로였지만 소박계를 중박계로 변경했다.⁷⁹⁾

그렇다면, 이러한 신미이정의 변화 속에서 대빈궁의 위상은 어떠했을까? 『태상지』에서 대빈궁은 궁의 범주에 포함되어 저경궁-육상궁-경우궁 다음에 수록되었고, 경종의 사친인 회빈 장씨의 사당으로 명시되었다.⁸⁰⁾ 영조 대 편찬된 『태상지』(奎貴865-v.1-2)와 정조 대 편찬된 『제물등록』(K2-2556)에서 대빈궁이 덕흥대원군, 광해군 등과 함께 분류된 것과는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조 대 이후 국가 차원에서 대빈궁을 관리하면서 타 궁방과의 차이가 부각되었고, 왕의 사친이라는 위상에 주목하여 궁원제의 궁과 함께 분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제품은 정조 대 마련된 규정을 그대로 따랐으므로, 궁원제의 궁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여전히 울창주와 폐백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이조에서 차정한 헌관이 아닌 내시가 축문 없이 제사지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저경궁과 연호궁의 찬품 중 소박계가 중박계로 변경된 것과 달리, 대빈궁에서는 소박계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한편 세자·세자빈의 墓가 원으로 승격되면서, 대빈묘는 『태상지』(K2-2043)에서 유일하게 묘로 분류되었다.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이 성립되었고, 황제국의 의례를 제정한 『대한예전』(K2-2123)에 처음으로 대빈궁의 제사 時日과 祝板이 기록되었다.⁸¹⁾ 그러나 『대한예전』 「饌實尊疊圖說」에는 저경궁, 연호궁, 육상궁, 경우궁의 진설도만 수록되어 있고, 대빈궁의 진설도는 빠져 있다.⁸²⁾ 1898년(광무 2) 경 宮內府 會計院에

79) 김윤정, 2023b 앞의 논문, 156면.

80) 『太常志』(K2-2043), 「太常志目錄」, “卷三. 祀典【各祭】. 廟【永昭. 文禧【今上辛未移奉于永昭廟內別廟】.】. 宮【儲慶. 毓祥. 景祐. 大嬪. 延祐. 宣禧. 宣嬪【今上辛未並移奉于毓祥宮內別廟】.】. … 墓【大嬪】. 各宮房【德興. 全溪. 光海. 王后考妣】.”; 『太常志』(K2-2043) 권 3, 祀典【各祭】. “宮. … 大嬪宮【禧嬪張氏. 景宗私親】.”

81) 『대한예전』 권2, 「吉禮·時日」, “春分秋分享, 儲慶宮, 延祐宮, 大嬪宮.”; 「길례·시일」, “大嬪宮, 春秋享祝維年號云云.”

82) 『대한예전』 권2, 「吉禮·饌實尊疊圖說」, “儲慶宮春秋享. … 延祐宮上同. … 景祐宮節享與毓祥宮同.”

서 왕실 제향에 필요한 물품의 수량과 비용을 조사하여 기록한 『享需調査冊』(K2-2583)에서 대빈궁은 「七宮二廟」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때의 칠궁은 저경궁·육상궁·연호궁·경우궁·대빈궁·선희궁·의빈궁이고, 이묘는 영소묘·문희묘이다. 춘추제를 지내는 대빈궁의 경우, 제향 시 소용되는 비용은 85.8냥으로 저경궁·연호궁과 동일하다. 그 외 巾袱, 器皿, 焚香炭, 黃筆의 비용과 청소비도 3궁이 동일하다. 단, 수복의 홍의와 두건 비용은 1인당 16.6냥으로, 대빈궁의 수복은 1명, 저경궁과 연호궁의 수복은 2명이어서 금액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대빈궁과 달리 저경궁과 연호궁에는 進上袱 2건 비용으로 6.3냥이 책정되어 있다. 한편 대빈궁에만 춘추제에 사용되는 돼지 2마리 비용으로 46.4냥이 추가되어 있다. 저경궁과 연호궁의 경우 『향수조사책』 「各祭享犧牲」 항목에 돼지 2마리가 책정되어 있는 반면, 대빈궁은 빠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⁸³⁾

이후 1908년(순종 1) 7월 23일(양력) 칙령 50호로 〈享祀釐正〉이 반포되면서, 궁원 의례가 간소화되었다. 궁에는 1년에 2번, 원에는 1번의 제사와 기신제를 지내는 것으로 통일되었다. 이 때 육상궁 영역 내에 저경궁·대빈궁·연호궁·선희궁·경우궁을 합설하여 6궁이 함께 자리하게 되었다.⁸⁴⁾ 대빈궁은 1887년(고종 24) 원래의 위치인 향교동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육상궁 안에 이설되었다.⁸⁵⁾ 선

83) 『享需調査冊』 권8, 「七宮二廟」. “儲慶宮春秋分. 祭享時各樣用下條八十五兩八錢, 一年巾袱等條二十八兩四錢三分, 各器皿等條四十七兩三錢, 焚香炭七兩二錢, 黃筆二柄眞墨一丁五錢, 進上袱二件六兩三錢, 掃雪除草費四十兩, 守僕二人紅衣頭巾三十三兩二錢, 合二百四十八兩七錢三分. … 大嬪宮春秋分. 祭享時各樣用下條八十五兩八錢, 一年巾袱等條二十八兩四錢三分, 各器皿等條四十七兩三錢, 兩享時猪二首并宰工四十六兩四錢, 焚香炭七兩二錢, 黃筆二柄眞墨一丁五錢, 掃雪除草費四十兩, 守僕一人紅衣頭巾十六兩六錢, 合二百七十二兩二錢三分.”

84) 『순종실록』 권2, 순종 1년 7월 23일(양력). “享祀釐正 … 儲慶宮一年二次 大嬪宮一年二次 延祐宮一年二次 毓祥宮一年二次 宣禧宮一年二次 景祐宮一年二次 及忌辰祭 陵園墓一年一次及忌辰祭但祧遷의 位에는 一年一次만 舉行함”; 단 밑줄 친 ‘及忌辰祭’ 4자는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승정원일기』 3227, 순종 2년 12월 3일 갑인, “第一條中景祐宮一年二次下에 及忌辰祭四字를 刪去함”).

85) 『승정원일기』 2959책, 고종 24년 4월 丁亥; 『승정원일기』 2960책, 고종 24년 윤4월 丙辰. 1885년 윤4월 4일에 이건을 위한 공역을 시작했고, 25일 만인 윤4월 29일에 사우가 완공되었다. 이건의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이건 과정에서 대빈궁 대신 ‘禧嬪張氏祠宇’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이 특징적이다.

희궁 역시 1897년(고종 34) 5월 27일에 원래의 자리로 옮겼다가,⁸⁶⁾ 이 때 다시 육상궁에 합설되었다. 저경궁과 경우궁이 새로 이봉되었고, 의빈궁은 신주를 매안하는 방식으로 철폐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08년(융희 2) 편찬된 『제물등록』(K2-2556·K2-255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사의 횟수는 춘추 2회로 동일하지만, 제품은 저경궁·연호궁·대빈궁과 육상궁·선희궁·경우궁으로 구분되었다. 대빈궁에는 중박계 1, 홍산자 1, 백산자 1, 상화병 1, 탕 2(泡湯·豬肉湯), 저육적 1, 저육숙편 1, 생선전유어 1, 세면 1, 초강 1기, 실과 3기에, 청주 1병, 小蜜燭 3정, 울금주 1병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제품은 저경궁·연호궁과 동일하지만, 대빈궁은 여전히 ‘폐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차등을 구현했다.⁸⁷⁾

1910년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 황실은 이왕가로 격하되었다. 따라서 1984년 갑오개혁 이후 왕실과 대한제국기 황실의 업무를 담당했던 궁내부는 일본 궁내성 산하의 이왕직으로 개편되었다. 이왕직은 일제가 패망하는 1945년까지, 궁원의 제사를 포함한 왕실의 제향을 담당했다.⁸⁸⁾ 이왕직 禮式課에서 1937년 편찬한 『홀기진설도』(K2-2587)에는 1929년 이봉된 덕안궁을 포함한 칠궁의 의례가 규정되어 있다.

『홀기진설도』에는 칠궁 제향을 위한 5개의 홀기(「七宮展拜笏記」, 「七宮酌獻禮親行笏記」, 「七宮酌獻禮攝行笏記」, 「七宮春分秋分祭享笏記」, 「七宮告由祭享笏記」)와 2개의 진설도(「毓祥宮景祐宮德安宮春分秋分祭及酌獻禮」, 「儲慶宮大嬪宮延祐宮宣禧宮春分秋分祭及酌獻禮」)가 수록되어 있다. 홀기는 전배례, 작헌례, 춘추제,

86) 『승정원일기』 3081책, 고종 34년 3월 壬子. 고종은 “육상궁에 합설한 것은 임시방편에서 나온 것으로 事體에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러한 선희궁의 이전은 대한제국기 왕실의 위상 강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심재우, 앞의 논문, 187면). 앞서 대빈궁 이전 공사가 25일만에 마무리된 것과 달리 선희궁의 공사는 2달 가량이 소요되었으므로, 위상을 높이는 작업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7) 『제물등록』(K2-2556·K2-2558). “儲慶宮延祐宮大嬪宮, 二次祭【春秋仲朔】. … 祭物器數【每宮】. 中朴桂一器, 散子二器【紅白】. 床花餅一器, 湯二器【泡湯·豬肉湯】. 豬肉炙一器, 豬肉熟片一器, 生鮮煎油魚一器, 細麪一器, 醋薑一器, 清酒一瓶, 果三器, 小蜜燭三丁, 鬱金酒一瓶, 幣一端【白】. 但大嬪宮, 幣無.”

88) 이왕무, 2021 「일제 강점기 이왕직 연구」 『동양고전연구』 82, 155면.

고유제 등의 칠궁 의례에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진설도를 통해 육상궁·경우궁·덕안궁과 저경궁·대빈궁·연호궁·선희궁 제품의 차등을 확인할 수 있다. 칠궁의 제사 횟수와 절차는 동일하지만, 음식의 진설 규모에는 차이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대빈궁의 제품은 『제물등록』(K2-2556·K2-2558)과 비교하면, 적 2기, 편육 1기, 탕 2기가 증가되어서 총 음식수는 17기이다. 또한 잣, 밤, 대추로 구성된 실과 3기에서 잣이 호두로 바뀌었다. 대빈궁의 제품은 육상궁·경우궁·덕안궁 보다는 소략하지만, 저경궁·연호궁·선희궁과 동일하다. 대빈궁은 궁원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칠궁의 하나로서 의례적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표 3〉 대빈궁과 저경궁의 時祭 제품 변화

제품		대빈궁 --->			=	<--- 저경궁		
		4회	2회	2회		2회	2회	2회
	자료	『제물등록』 (정조)	『태상지』 (고종)	『제물등록』 (순종)		『제물등록』 (순종)	『태상지』 (고종)	『제물등록』 (정조)
유밀과	중박계			1	1	1	1	
	소박계	1	1					1
	홍산자	1	1	1	1	1	1	1
	백산자	1	1	1	1	1	1	1
떡	상화병			1	1	1	1	1
	切餅	1	1					
	賓煮	1	1					
탕	豆泡	1	1	1	1	1	1	1
	생선	1	1		1			
	豬肉			1		1	1	1
	鷄				1			
	白淸				1			
적	저육	1	1	1	1	1	1	1
	계				1			
	생선				1			
편육	저육	1	1	1	1	1	1	1
	豬頭				1			
	煎油魚			1	1	1	1	1
	細麪	1	1	1		1	1	1
	醋薑	1	1	1		1	1	1

實果		3	3	3	3	3	3	3
술	鬱金酒				미상	1	1	1
	淸酒	1	1	1		1	1	1
초	四燭	2			미상(4)			
	小蜜燭		2	3		3	3	
	五兩燭							3
폐백	백폐	×	×	×	1	1	1	1

5. 맺음말

대빈궁은 경종 대 사친추보를 위해 창안된 대빈이라는 새로운 칭호와 함께 등장했다. 대빈은 대원군과 마찬가지로 ‘大’자를 더해 사친을 높이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영조가 숙빈 최씨에게 대빈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옥산부대빈은 유일한 대빈으로 남게 되었다. 대빈은 ‘육상’, ‘저경’ 등과 같이 궁원제에 따른 궁호가 아니며, 대빈궁의 ‘궁’은 존칭, 궁방, 사우 등의 의미를 갖는 다층적인 개념이었다.

경종 대 대빈사우가 건립되면서, 인빈과 신비의 전례를 따른 제사 의절이 마련되었다. 대빈의 제사는 관청의 인적·물적 지원을 받았지만, 경종이 주관하는 국가사전과는 구분되어 봉사자 없는 제사로 거행되었다. 왕의 私親인 덕흥대원군과 인빈의 제사에 별도의 봉사자를 둔 것과 달리, 대빈의 제사는 신비의 전례에 따라 내시가 축문 없이 지냈다. 이러한 방식은 봉사자 없는 왕실 구성원을 위한 왕실례의 특징적 양상이다. 한편 인빈의 전례를 따라 사중삭 初丁日에 사시제를 지내고 肉饌을 사용하여 사우에서 기신제를 지내는 방식은 사가례의 성격을 보여준다. 사친을 위한 私廟의 제사는 사가례를 원칙으로 하지만, 봉사자 없는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 내시가 축문 없이 지내는 왕실례를 절충한 것이다.

89) 『흙기전설도』는 음식명이 다르다. 편육을 熟片, 전유어를 魚煎으로 기록했으나 동일한 음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형식이므로, 확인되지 않는 술과 초의 종류는 미상으로 처리했다.

영조 즉위 후 사친추보를 취소하고 대빈사우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대빈사우를 존속시켰다. 그러나 후궁 사친을 위해 마련된 궁원제의 대상에서 대빈을 제외시킴으로써, 대빈 의례는 국가사전 내에서 의례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돌출적인 형태로 남게 되었다. '대빈궁'은 궁원제의 궁이 아닌 궁방으로 분류되었으나 다른 궁방과 달리 봉사자가 없었으므로, 내시의 관리에 따라 궁방의 소속들을 중심으로 제사가 거행되었다. 따라서 정조 즉위 후 추진된 '대빈궁' 궁결의 환속은 대빈 의례의 파행을 초래했던 것이다.

정조는 내시의 파견과 봉상시의 지원을 이유로 궁결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궁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관행을 바꾸기는 어려웠다. 이에 정조는 국가의 관리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빈궁의 제도를 정비했다. 경종 대 규정을 재확인하여 내시들의 역할을 강조했고, 정기적인 관청의 간심을 통해 사우와 묘소를 관리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제사의 기준에 따라 대빈의 기신제를 사우가 아닌 묘소에서 素饌으로 지내도록 수정했다. 또한 제품을 조천한 궁인 저경궁 보다 낮추어 대빈 의례의 차등적 위상을 규정했다. 이러한 정비를 통해 대빈 제사의 사가례적 성격이 제거되었지만, 내시가 축문 없이 제사하는 왕실례적 특징은 유지되었다. 이조에서 차정한 헌관이 아닌 내시가 제사를 주관함에 따라 폐백과 울창주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궁원·묘묘 제사와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국가사전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종 대 대빈궁은 육상궁의 별묘에 이봉되었고, 조천의 원칙에 따라 그 의례가 변경되었다. 육상궁과 함께 위치했지만, 왕이 친행하는 전배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제품에도 차등이 유지되었다. 1908년 육상궁 영역에 육궁이 합설되면서 궁원 의례는 간소화되었고, 대빈 의례의 차등은 완화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대빈궁은 궁호를 받은 궁들과 함께, 칠궁의 하나로서 의례적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조선의 망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빈궁의 의례적 차등도 해소되었다. 조선 시대 국가 의례는 유교 도덕의 실천이라는 대의명분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등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에 따라 계속 변화되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타율적 요인에 따라 급속하게 의례의 간소화가 진행된 측

면이 있다. 조선시대 국가 의례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유교 이념을 구현했지만, 조선의 망국과 더불어 그 원칙과 의미 역시 가치를 상실했다. 이후 일제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차등이 해소된 간략한 방식으로 국가 의례의 명목이 유지되었을 뿐이다.

주제어 : 대빈궁, 희빈 장씨, 칠궁, 의례적 차등, 궁원제

투고일(2023. 7. 31), 심사시작일(2023. 8. 11), 심사완료일(2023. 8. 29)

〈Abstract〉

The History of Daebin-Gung and the Patterns of it's Ritual
Change

Kim, Yunjung*

Daebin-Gung Palace is the shrine of Heebin Jang, the concubine of King Sukjong and the birth mother of King Gyeongjong, and is included in Seven Shrines. Daebin-Gung appeared with a new title called Daebin, which was created for Gyeongjong's return the grace of his birth mother. Daebin was not the name of Gung according to the system of Gungwon such as 'Youksang' and 'Jeokyung' and the gung of the Daebin-Gung was used as a multi-layered concept with the meaning of honorific name, gungbang, and shrine.

With the establishment of Daebin's shrine in the reign of King Gyeongjong, the ritual of memorial service was arranged following the precedents of Inbin and shinbi. Although the ritual of Daebin received human and mater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ffice, it was held as a ritual without an heir, distinguishing it from the national memorial service by King Gyeongjong. In principle, the memorial service of the birth mother in private shrine was based on the private ritual, but it was a compromise between the royal ritual in which the eunuch perform without a chukmun.

King Yeongjo maintained Daebin's shrine, but Daebin was excluded from the System of Gungwon for the king's birth mother, the concubine. The ritual of Daebin was held mainly by the people of the gungbang, and it remained in a protruding form without securing a ceremonial status within the national memorial service. Therefore, King Jeongjo's decision to remove the Gungban's funds led to the disruption of the memorial service for Daebin. In response, King Jeongjo reorganized the ritual of Daebin-Gung by expanding state management and support. In this process, the tendency of private ritual in Daebin-Gung was remov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national rituals. However, it

* Researche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mphasized the distinction from the national memorial service by adhering to the royal ritual characteristics of eunuchs without chukmun.

In the reign of King Gojong, Daebin-Gung was relocated to the separate shrine of Yuksang-Gung, and the ritual was chang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Jocheon. Although it was located along with Yuksang-Gung, it was excluded from the ceremony of bowing conducted by the king and the difference was maintained in the ritual food. With the incorporation to the area of Yuksang-Gung in 1908, the court ritual was simplified, and the difference in the Daebin's ritual was eased.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Daebin-Gung secured its ritual status as one of the Seven shrines, along with the Gung that received the name of Gung.

Key Words : Daebin-Gung, Heebin Jang, Seven Shrines, Ritual Difference, System of Gungwon